

국 토 교 통 부

훈계요구·통보

제 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미이행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횡성군

관 련 자 횡성군 ○○○○과

지방○○○○○○○ ○○○

내 용

위 관련자 지방○○○○○○○ ○○○는 2013. 3. 5.부터 2016. 6. 30.까지, 국토교통부 등¹⁵⁰⁾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업체의 명단을 통보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2」의 기술능력, 자본금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¹⁵¹⁾ 등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6]에 따르면 시·도지사¹⁵²⁾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건설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건설업등록을 말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건설

150)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는 국토교통부, 타 지방자치단체, (재)건설산업정보센터 등에서 시·도 및 시·군으로 통보

15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20 내지 100분의50의 범위 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 받아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규정된 보증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증명

15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10의2호에 따라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권한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위임, 시·도에서는 조례에 따라 전문건설업에 대한 권한은 해당 시·군으로 위임

공사를 도급받거나 하도급 받은 건설업자¹⁵³⁾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 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에 따르면 시·도지사¹⁵⁴⁾는 건설업자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89조 [별표7]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¹⁵⁵⁾를 부과¹⁵⁶⁾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횡성군(○○○○과)에서는 2013. 4. 1. 국토교통부로부터 (주)○○○○(대표자 ○○○, 대상업종 : 토공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미 통보한 혐의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으므로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도, 혐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 6개월이 경과한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를 비롯하여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11개 업체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로 인한 등록기준 미달 혐의로 통보된 2개 업체 등 총 13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에서 지적되자 2016. 10. 31.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를 하였다.

153) 1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또는 1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건설업자

15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시정명령·지시 권한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위임, 시·도에서는 조례에 따라 전문건설업에 대한 권한은 해당 시·군으로 위임

155) 과태료는 횡수별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이며, 다만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하도록 규정

15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의 권한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위임, 시·도에서는 조례에 따라 전문건설업에 대한 권한은 해당 시·군으로 위임

조치할 사항 **황성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미 통보한 11개 업체 및 보증가능
금액확인서 실효로 인한 등록기준 미달 혐의로 통보된 2개 업체 등 총 13개 업
체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 및 영
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를 각각 이행하시기 바랍니다.